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. 5. 11 선고 2020가단1466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

대한민국

피 고

AAA

변 론 종 결

무변론

판 결 선 고

2021. 5. 11

주 문

1. 피고와 BBB 사이에,
가.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2. 5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나. 별지2 목록
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2. 5. 체결된 증여계약을 45,200,000
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. 2. 6. 접수
제90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피고는 원고에게 45,2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

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4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